

**Global CHA University**

**차 의과학대학교 스포츠의학과  
내부 규정집**



## 1장. 학과 운영규정

제1조 (총칙) 본 내규는 차의과학대학교 학칙 및 규정에 의거하여 건강과학대학 스포츠의학과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학과명칭) 본 학과의 명칭은 ‘스포츠의학과’ 로 하며 영문명칭은 ‘Sports Medicine’ 라 한다.

제3조 (전공) 본 학과의 전공은 ‘스포츠의·과학’ 으로 한다.

제4조 (전공 취득) 전공취득 인정기준은 다음에 준한다.

- 1) 전공과목 70학점 이상 이수 할 시 스포츠의학전공으로 인정한다.

제5조 (졸업 요건) 학과 졸업 요건은 다음에 준한다.

- 1)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졸업이 가능한 자로 정한다.
  - 학교 졸업 요건에 모두 충족하는 자
  - 교양필수 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
  - 해당 학번에 맞는 전공 기초 및 전공필수 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
  - 졸업논문 및 시험에 합격한 자
  - 135학점 이상 학점을 취득 한 자(2017년 8월 졸업자부터 적용) (2017년 2월 졸업자까지:128학점)

제6조 (부전공 및 다중전공) 부전공 및 다중전공 인정기준은 학칙에 의거 다음에 준한다.

- 1) 부전공과 신청자는 27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.
- 2) 다중전공 신청자는 60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.
- 3) 부전공 및 다중전공 신청자는 아래 첨부와 같이 각 전공과목 인정기준에 준하여 인정한다.
  - \* 전공과목 인정 기준은 학과사무실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
제7조 (소속변경) 스포츠의학과로의 소속변경은 학교 학칙 및 규정에 의거하며 다음에 준한다.

- 1) 소속변경은 1학년 과정 이상을 수료한 3학년 이하의 학생에게 한하여 허용하며 학교가 정한 소속변경 학과의 이수학점을 충족하여야 한다.
- 2) 위 1)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스포츠의학과 모든 전임교수의 면담과 동의하에 소속변경을 인정한다.

제8조 (학생징계) 학생의 규율 및 징계는 학교 학칙에 의거하여 처리하며, 오프라인과 학과 홈페이지, 카페등의 온라인상에 학우간의 강압적 규율이나 학과의 위신을 추락시킬 시 엄중히 처벌할 것임을 공지하고 행한다.

제9조 (내규 변경) 본 내규의 변경은 학과 교수 회의의 동의로서 가능하다.

제10조 (준용조항) 본 내규에 없는 규정들은 차의과학대학교 학칙과 세칙을 준용한다.

부칙 1. (적용시기) 본 내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